

위원회 전용:

타운/시/워드 선거구:

등록번호:

당:

등재:

뉴욕주 특별 투표 신청서

정자체로 작성해 주세요.

1. 올해 다음 선거에 사용 ☐ 예비 선거 ☐ 총선거 ☐ 보궐 선거 (한 가지만 선택)

2. 성 이름 중간 이름 첫 글자 이름 뒤 호칭

3. 거주지 주소(주거지) 도로명

4. 거주지 소재 카운티

5. 거주지 주소(주거지) 도로명 동·호수 시 주 우편 번호
뉴욕

6a. 본인은 이 카운티에 등록된 유권자(예비 선거의 경우 등재 유권자)이며, 다음의 이유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없습니다:

- ☐ 선거법 제11-300조: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위치한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것은 본인의 종교적 신념에 어긋납니다. (선거일 일주일(1주일) 전부터 선거일 당일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직접 투표해야 합니다.)
- 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본인에게 직접 교부해 주세요. (모든 특별 투표 유형에 이용 가능한 교부 방법)

6b. 본인은 이 카운티에 등록된 유권자(예비 선거의 경우 등재 유권자)이며, 다음의 이유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없습니다:

- ☐ 선거법 제11-302조: 선거관리위원회 직원, 선거 감독관, 투표소 직원, 선거 진행 담당자, 투표 집계기 관리인/기술자로서의 본인 업무로 인해 다른 곳에 있어야 합니다. (선거일 당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투표하고 투표용지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전달해야 합니다.)
- ☐ 선거법 제11-306조: 본인은 가정 폭력의 피해자이며, 그와 같은 폭력으로 인해 거주지를 떠났으며, 나아가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·가구 구성원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피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위협으로 인해 특별 투표를 하고자 함을 선서 또는 확인합니다.
(직접 반환하는 투표용지는 선거일 당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도착해야 합니다. 우편으로 반환되는 투표용지는 선거일 당일까지 우편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.)
- 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본인에게 직접 교부해 주세요. (모든 특별 투표 유형에 이용 가능한 교부 방법)
- ☐ 우편으로 전달해 주세요. (우편 주소를 기재하세요. 우편 전달은 투표소 직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특별 투표용지에만 적용됩니다.)

도로 주소 동·호수 시 주 우편 번호

아래에 신청자 서명 필수

7. 유권자 서명 또는 표시 날짜 ____/____/____
대리 기표인 서명 날짜 ____/____/____
대리 기표인 주소